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9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394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채란(기소), 황금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이완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3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6.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감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 원심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각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원심 판시 강간미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승규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29

판사 이현석 _____

판사 이강호 _____